

[사법농단 ISSUE PAPER ⑬]

전교조 사국선언 · 김형근 교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7. 26. (목)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1
나. 고 김형근 교사 사건	4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3
가.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 ..	6
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7
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입법 추진 전략 [82] ..	8
3. 특조위 조사보고서 내용	9
가. 조사내용의 기재	9
나. 특조단의 평가	10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11
가. 비판적인 표현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11
나. ‘빨갱이’ 몰이에 협력한 고 김형근 교사 사건	13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14
가. 문건 의미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	14
나. 구체적 작성·활용 경위 조사 필요성	14
다. 재판에 대한 영향 조사 필요성	15

1. 사안의 개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의 조사보고서에서 언급한 사건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관련된 판결은, ①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②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으로 명명된 고(故) 김형근 교사 사건, ③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이다. 이 중 ③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진행 중 대법원의 결정 방향 및 결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다수의 문건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재판거래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범외노조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8. 7. 9. 발표된 민변 사법농단 이슈페이퍼(6) 참조).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다소 빗겨져 있으나, ①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② 김형근 교사 사건 역시 재판거래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사건들이다.

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2009. 6. 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교사 17,000여 명은 「교사시국선언-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정 쇄신, 언론·집회·인권 및 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학교 정책 중단과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이하 ‘1차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인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었다.

시국선언 직후 곧바로 참여 교사들 및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며 전교조 전임자들을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체포,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

전교조는 2009. 7. 19. 28,600여 명의 교사들이 연명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제차 발표하였다(이하 ‘2차 시국선언’).

2차 시국선언 이후 정부의 탄압은 한층 가속화되었다.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대규모 중징계절차가 진행되어, 해임이 17명, 정직이 49명에 이르렀다. 검찰 조사도 본격화되면서 결국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등 교사 88명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¹⁾

전국의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사건이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1심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²⁾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³⁾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8인, 소수의견 5인.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4조. 현재는 84조의2로 조문 이동).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등 참조).
- 2) 대전지방법원 2010. 2. 25. 선고 2009고단2786, 2009고정2259, 2009고단4126(병합) 판결 - 피고인들이 참가한 시국선언이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로 판단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낡은 경험에 근거한 편견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교육행정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전주지방법원 2010. 1. 19. 선고 2009고단119, 2009고정1105(병합) 판결도 같은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 3) 대전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노618 판결. 시국선언문에서 당시 정권을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에 비유하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이념, 제도, 역사적 사실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사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행위 과정에 있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보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위한 이상 곧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김용덕 대법관).

대법원 다수의견(양승태, 김능환,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⁴⁾ 민일영, 박병대, 김용덕)은 국정운영의 쇄신을 촉구하는 1차 시국선언에 대하여 전교조 간부들이 선거에 대한 영향 내지는 반(反) 현 정권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인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 및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격한 것이고 학교를 정치공론장으로 변질시켜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국가 공무원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차 시국선언은 그러한 1차 시국선언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역시 국가공무원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⁵⁾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행위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른 데 대하여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⁶⁾ 이후 다른 형사사건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해임징계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징직 이하의 징계는 대체적으로 유지되었다.

-
- 4)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 2차 시국선언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5) 대법원 다수의견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해석하여 왔던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의 의미를,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소수의견(박일환, 전수안,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은 “당해 집단행위가 국민전체와 공무원 집단 사이에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그와 별개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법리 하에서 1, 2차 시국선언은 “유사한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것이거나 그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서명한 교사 명단을 취합하여 발표한 것만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교사들의 직무수행 등 교육행정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도 아니라며,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2차 시국선언 관여는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6) 이종수,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가부”, 헌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4) ; 조국,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형사정책 제24권 제2호(2012) ; 문현웅,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론 제100호(2012) 등

나. 고 김형근 교사 사건⁷⁾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관촌중학교 도덕 교사이자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고(故) 김형근(이하 ‘김 교사’)은 2015. 5.경 관촌중 내 통일산악회 회원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 180여 명과 함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제2회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하였다. 관촌중학교는 2005년 교육청으로부터 ‘통일시범학교’로 지정받는 등 통일교육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었고, 김 교사는 그러한 통일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산행 전 일정으로 전야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음날은 산악회의 산행 일정으로 추모제 본행사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약 1년도 훨씬 지난 2006. 12. 6.경 조선일보는 난데없이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비전향 장기수들과 ‘빨치산 추모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 교사가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 없이 섬멸하자”와 같은 빨치산 구호가 제창되는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였고, 동료 교사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였다는 등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하였다.

한때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로 주목받던 김 교사는 기사 이후 한순간에 ‘빨갱이 교사’로 몰리게 되었다. 이듬해인 2007년 4월 수사기관은 그의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결국 김 교사는 전야제에서 중학생들을 포함한 참가자들로 하여금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발언을 듣게 하고 자신도 이에 호응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08년 1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기소당하기에 이르렀다. 압수수색으로 나온 김 교사의 수업자료 등은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 혐의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1, 2심 법원은 모두 전야제 참가행위 등 김 교사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7)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⁸⁾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재판장 신영철 대법관, 주심 김용덕 대법관), 결국 김 교사는 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⁹⁾

1, 2심 법원은 경찰 작성의 보안상황보고, 증인신문 등에 기반하여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빨치산 대표의 발언 등은 추모제 본행사에서 있었던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기반으로 전야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행사에 해당하고, 이에 참가한 김 교사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¹⁰⁾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2013년 올해의 문제적 판결(한겨레 21, 제992호)」,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한겨레 21, 제1177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특조단이 2018. 5. 25.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문건 중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고 김형근 교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2015. 7. 27. 작성·보고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2015. 7. 28. 작성·보고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2015. 7. 31. 작성·보고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 2015. 11. 19. 작성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 등이다. 이 문건들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김형근 교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가 정부 운영에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로 반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8) 전주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8고단21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노224 판결.

9) 전주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노341 판결.

10) 한편, 1, 2심 법원에서는 김 교사에게 학생들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준비할 목적으로 북한자료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취득·소지·반포에 관하여 이적목적성을 부인한 표현물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적목적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가.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¹¹⁾는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으며, ① 과거사 정립,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 ③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④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⑤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 구체적인 판결 사례들을 모아놓고 있다.

1. 과거 왜곡의 광정

■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①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 아래 ①과거사 정립, ②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②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
- 아래 ③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4대 부문 개혁 중 ④노동, ⑤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이 중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관련하여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를 위해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여 혼돈·경시되어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 노력을 한 사례로 김형근 교사 사건 판결을 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하였다.

11) 2018. 5. 25. 발표된 특조단의 조사보고서에서는 문건명을 ‘현안 관련 말씀 자료’로 기재하고 있으나, 보고서 인용 파일 추가 공개 시의 파일명은 ‘과거왜곡의 광정’이다.

●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걸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 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

한편 ⑤ 교육 부분과 관련하여 전교조 사건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한 판결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판결을 적시하였다.

■ **6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

- 교육 부분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이 다수 존재함 ⇨ 역시 **4대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함**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 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도 [70] 문건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이라면서 청와대에 대한 설득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문건이다. 청와대 내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타개책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협력 관계 노정의 과거와 미래상 제시”를 언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를 제시하면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고 김형근 교사 사건 판결을 대표적 협력 사례로 들고 있는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의 내용을 그대로 넣고 있다.

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입법 추진 전략 [82]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민정수석의 입장을 변경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다. 민정수석에 대한 ‘압박카드’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을 제시하는데,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청와대가 상고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 때 우선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는 ‘협력 사례’ 중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이 포함하고 있으며, [별첨 자료 3]으로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와 거의 같은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ㄹ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옴 ⇨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 3]

-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들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 그러나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가. 조사내용의 기재

특조단 조사보고서는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을 진실 규명 대상으로 구별하여 검토하지는 않고, 『10.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의 일부 내용(나. 기타 - 1)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조사보고서 166쪽 이하)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 중 [80] 문건에 대해서, “시진국 심의관이 기조실 심의관들이 각각 작성한 부분을 취합하여 완성한 문서로서 작성 지시자인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2015. 7. 28. 보고”한 것이라며, 정다주 판사가 앞서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 [70]’,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의 내용이 그대로 삽입되었다고 한다.

“임종헌 기조실장은 상고법원 입법안에 대한 청와대 내 견제·반대분위기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 설득의 최종 골든 타임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청와대 내 부정적 인식 및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조사보고서 171쪽).

또한 [82] 문건과 관련해서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한 것으로, “19대 국회가 12. 9. 정기국회 종료로 사실상 활동 종료가 예상되고 청와대, 법무부의 반대 기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입법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최후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되 반대 입장의 진양지인 청와대 극복을 위한 효과적 협상전략 수립을 검토”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3쪽).

나. 특조단의 평가

특조단은 [80] 문건 중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뚜렷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지만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조사보고서 172쪽). 임종헌 기조실장과 정다주 심의관의 진술, 거론된 대법원 판결들의 주심 대법관 및 선고 시기, 이 문건이 대법원장이나 처장에게 보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문건은 임종헌 기조실장이 대국회 관계에서 당시 여당측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 정도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6쪽).

한편 [82]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라고 하면서(조사보고서 173쪽), “2015. 11. 19.의 임종현 전 차장 직접 작성의 [82] 문건에서는 그와 같은 조율 역할까지 수행해 왔는데 상고법원 입법안이 좌절될 경우 더 이상 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고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의 표방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다고 분석 및 보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의 임종현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령 그러한 협력이나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앞으로 더욱 심한 재판 관여 내지 간섭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문건을 당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조사보고서 176, 177쪽).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특조단이 공개한 위 문건 내용을 종합하면, 전교조 시국선언, 고 김형근 교사 사건 사건 판결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또는 이전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고 ‘교육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협력한 재판’이었으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하여 활용한 재판이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 비판적인 표현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법원행정처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을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교육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판결’로 들고 있는 이유는 전교조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떠오던 수월성 위주의 교육 정책 등 정부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왔던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부터 전교조는 정부의 집중적인 탄압 대상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회의에서 지시·강조한 사항을 정리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원세훈 사건에 제출된 국정원 회의 녹취록 등에서 정보기관이 적극 나서 전교조의 비판적 활동을 막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차 시국선언 바로 다음날인 2009. 6. 19.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나섰다며 종북좌파 단체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2011. 2. 18.에는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와 싸우는 것이 더 어렵다며 확실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¹²⁾ 박근혜 정권 당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에서도 전교조를 향한 꼼꼼한 탄압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판결은 교사·공무원의 집단적 표현행위인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정립한 판결이다.¹³⁾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고, 자동적으로 교사·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을 통해 교사 및 교원노조의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워 정부가 ‘교육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

12) 녹취록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2017. 11. 24.자 뉴스타파 기사, 「전교조 죽이기, 9년 전쟁」 참조) - “각 부문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전교조까지 이제 나서서 시국선언한다는데, ... 정당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는 맨 앞장서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2009. 6. 19.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원세훈 원장 발언)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말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2011. 2. 18.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중 원세훈 원장 발언)

13)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주로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작용하여 왔다. 대법원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미를 축소해석하여 왔다고 들고 있는 판결(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도 모두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관련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공무원·교원의 노동운동이 가능해지자 오히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미가 확대되었다. 공무원·교원의 정파적인 활동이 문제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으로 기소하였어야 할 것이나,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그에 부합하지 않자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사법부는 공무원·교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행위까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법리를 정립하였다.

진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 듯하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은 노동 문제에 관하여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김지형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나 갑작스레 선고가 연기됨으로써 결국 무죄 입장을 보였던 김지형, 박시환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2년 4월, 보수적인 성향의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비판적인 의사표현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에 맞춰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 외부적 요인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된다.

나. ‘빨갱이’ 물이에 협력한 고 김형근 교사 사건

법원행정처 문건은 고 김형근 교사 사건 판결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하며, 과거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시된 국가관의 방향을 바로 정립한 사례로 소개한다.

김 교사가 전야제 참여로 재판을 받게 된 실질적 계기는 전야제 참가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조선일보의 보도였다. 조선일보는 김 교사가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동원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1, 2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빨치산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구호는 김 교사 일행이 참석한 전야제 때가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추모제 본행사 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에서 실시한 사실인정의 근거(경찰의 정보 상황 보고문 등)를 배척하고, 인터넷 뉴스 기사를 근거로 김 교사가 빨치산 찬양 구호가 외쳐지는 전야제 행사에 학생들을 데려갔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한 법리보다 당시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는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사실마저 달리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가. 문건 의미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

앞서 본 것처럼 특조단은 위 [80] 문건을 “임종헌 기초실장이 대국회 관계에서 당시 여당 측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 정도였던 것”으로 보았으나, 그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평가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내용이 다른 시기 다른 문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특히 2015. 8. 6.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오찬 회동을 앞두고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자료 [70]’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구체적 작성·활용 경위 조사 필요성

앞서 본 것처럼 특조단 조사보고서는 [82] 문건에 대하여 “임종헌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하였음”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왜 직접 그러한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대한 설득 또는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기초 역시 유지”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여 실제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갔는지에 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활용하겠다는 기초 유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반복적으로 열거하면서, 여러 문건을 만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획·예비 단계에만 거친 것으로 단정하고 조사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당 문건의 구체적 작성 경위와 실제 활용의 모습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다. 재판에 대한 영향 조사 필요성

특조단은 [82] 문건을 분석하면서 ‘협력이나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라고 하여, 실제 영향력 행사(=조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단 스스로 시인하였듯이 이 문건 내용을 보면 “당시의 임종헌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실제 재판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각 재판의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의 경우, 주심이었던 대법관을 포함하여 무죄 입장의 대법관들 퇴임 후, 유죄 입장의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주심 변경이 원칙에 맞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안대희 대법관은 2012. 4. 19.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관하여 유죄 취지 의견을 낸 후, 5개월도 채 못 되어 같은 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으로 취임하였고, 이 역시 ‘거래’와 완전히 관련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정부에 ‘협력’하겠다는 의사가 실제 평결과 재판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